

* 관련 규정 : 강원대학교 학업성적처리지침

- 제9조(휴학자 및 자퇴자 성적처리)** ①수업일수 3분의 2 이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수강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고, 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휴학 및 자퇴자의 성적은 인정한다.
- ②다만, 군 입대 및 질병 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한 것으로 할 수 있다.
- ③수업일수 3분의 2 이후에 군 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성적인정을 원할 경우에는 담당교원이 선 시험(별도의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요구)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평가 결과를 성적에 반영한다.
- ④미등록 제적자의 성적은 수업일수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는다.
- ⑤위 제2항에 해당되어도 종강 이후에 휴학자는 성적을 인정한다.